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중 “대차대조표”를 “재무상태표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고 있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 제269조제4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신탁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(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4조의2제3호 중 “전문사모집합투자업”을 각각 “일반 사모집합투자

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
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”를 “기
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”로 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2항제6호 중 “사모투자전문회사”를 “기관전용 사모집합
투자기구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 기간)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<u>대차 대조표</u>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24조(신탁업자의 확인 등) ① <u>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(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1조(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 기간) ----- ----- <u>재무상태표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4조(신탁업자의 확인 등) ① <u>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고 있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 제269조제4항제2</u></p>

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제24조의2(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법 제249조의 3제5항에서 “등록신청서 흡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

1. · 2. (생 략)

3.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,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249조의3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외

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신탁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(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 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
제24조의2(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)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-----
----- 일반 사모집합투자업-----

국 집합투자업자”라 한다)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(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)에 의한 조사 ·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 · 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 ·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